

#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

## 제 1 조 (목적)

본 가이드라인은 STX 엔진 주식회사(이하 '당사'라 한다)의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)

1.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는 구성요건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"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"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운용한다.
2. 심의위원회는 조달팀장 및 팀 내 파트장으로 구성한다.

## 제 3 조 (수행업무)

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협력사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여부 사전 심의
2.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
3.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
4. 연간 거래 예상금액 1 억원 이상 또는 부품단가 2 백 만원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의
  - A.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여부
  - B.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위반여부
  - C.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 - D.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위반여부

## 제 4 조 (심의위원회 개최)

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.

## 제 5 조 (서류보존)

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 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가이드라인은 2018. 06. 01 부터 시행한다.